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2024. 3. 8. 금요일  
14:00 ~ 16:00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 설명회 주요일정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회 개최 및 인사말	방통위
14:10~15:10 (6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4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계획 설명	KISA
15:10~16:00 (5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질의 응답	참석자
16: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회	

# CONTENTS

## 본인확인제도 설명 및 지정심사 신청절차 안내

- I 추진 배경 및 제도 설명
- II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절차 설명 (23년 변경사항)
- III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주안점 (심사항목 7장 관련)
- IV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참고자료 설명
- V 참석자 질의응답





CHAPTER

I



# 본인확인제도 추진 배경 및 제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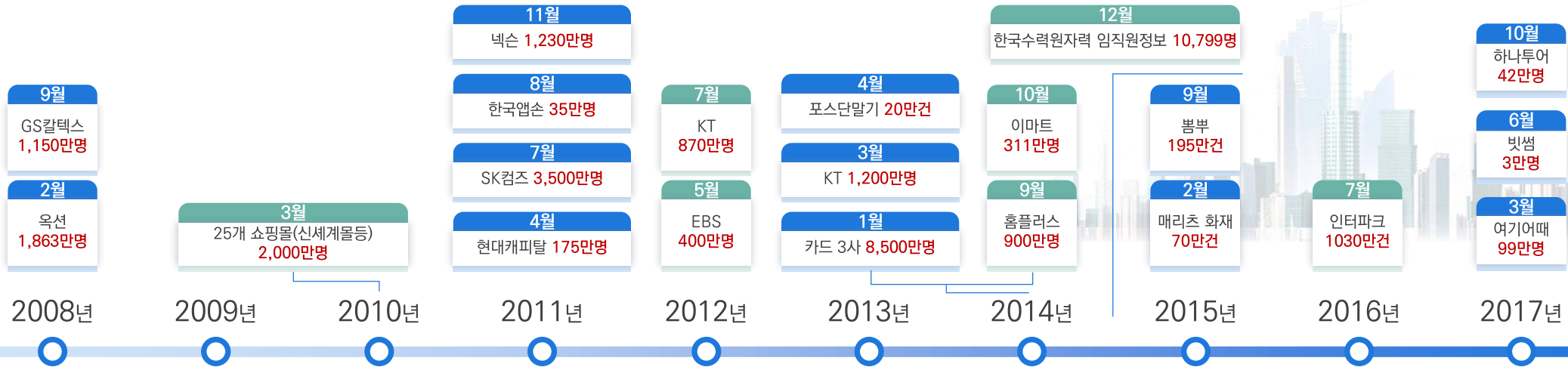


# 본인확인제도 추진 배경

배경 및 제도설명

## 개인정보 유출사례(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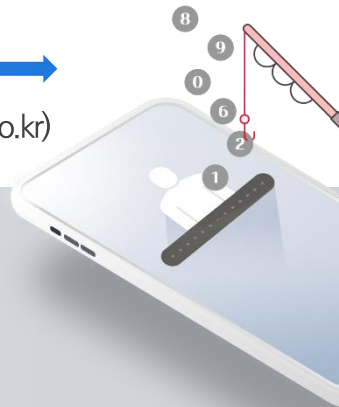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저장·처리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주민번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 출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특히,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변경이 어려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지속 발생 우려**



## 주민번호 침해사고 대책 검토



- ① 주민번호는 개인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특징
- ②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
- ③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

##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보급('05년~)

**본인확인제도**

- ☑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
- ※ 일반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가입시 실명확인 용도로 주민번호를 수집(과거)

## 주민번호 사용금지('12년~)



- ☑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12년) 및 개인정보보호법('13년) 개정
-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 출범에 따라 관련 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1

###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

- ☑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금지
- ☑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생략)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 ☑ 대체수단 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생략)

## 3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본인확인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가능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본인확인업무를 6개월 이상 개시하지 않거나 휴지한 경우
4.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본인확인기관 사업계획서, 심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등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 ('23년말 기준)

## 본인확인기관

## 대체수단 서비스내용



아이핀

- ☑ 신용평가사 (3社)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신용정보 기반으로 발급된 본인확인수단
- (인증방식) ID/PW+추가인증 방식, 모바일앱 방식



휴대폰

- ☑ 이동통신사 (3社)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휴대폰 기반으로 발급된 본인확인수단
- (인증방식) 휴대폰 OTP인증 방식, 모바일앱(PASS) 방식



신용카드

- ☑ 신용카드사 (7社)
  -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용카드 기반으로 발급된 본인확인수단
- (인증방식) 모바일앱(앱카드) 방식, ARS인증 방식, 홈페이지 인증 방식



인증서

- ☑ 전자서명 인증기관 (11社)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인증서 기반으로 발급된 본인확인수단
- (인증방식) 전자서명(인증서) 방식

- 2005.10월 | **정보통신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발표
- 2005.10월 | 아이핀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 2008. 6월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제23조의2)**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1. 4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제23조의3)**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1.10월 |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본인확인기관(3社) 신규 지정
- 2012. 2월 | **주민번호 사용금지 제도(제23조의2)**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3. 1월 |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본인확인기관(3社) 신규 지정
- 2018. 4월 |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7社) 신규 지정
- 2019. 4월 |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1社) 추가 지정
- 2020. 6월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 2020.12월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서 본인확인기관(5社) 신규 지정
- 2021. 8월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서 본인확인기관(1社) 추가 지정
- 2022. 6월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서 본인확인기관(4社) 추가 지정
- 2023. 8월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서 본인확인기관(1社) 추가 지정



CHAPTER

II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절차 설명



## 2024년 주요 변경내용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공고제

- ✓ [기존] 공고를 통한 지정심사 신청 접수 + (경영상 긴급사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 신청 접수  
[문제점] 수시 신청 수요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력 운용, 예산 불용 등의 문제 존재

**[변경] 수시 신청 접수 폐지 → 지정심사 공고제로 일원화**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 2024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절차 및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일정	수행내용	
24년 3월 8일	설명회 개최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및 신청서류 준비 안내</li> </ul>
3월 중	지정심사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li> </ul>
4월 1~3일	신청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서류 접수</li> </ul>
4월 11~12일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①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보정, 현장실사 준비 등 요청</li> </ul> </li> </ul>
7~8월	현장실사 (기관당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②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li> </ul> </li> </ul>
9월 중	종합심사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③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관의 청문회의(소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li> <li>심사보고서,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평가</li> <li>※ 최종평가 방법: 적합/부적합 + 점수평가(800점 이상)</li> </ul> </li> </ul>
9월 말	방통위 의결 (지정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결과정리 및 지정여부 결정</li> <li>※ 필요시 조건부지정 가능</li> </ul>
10~12월	이행점검 및 지정서 교부 (조건부지정 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심사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완료여부 확인후 지정서 교부</li> </ul>

##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4월초)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종류

-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방통위고시 서식1)
- ☑ 본인확인서비스 사업계획서 (방통위고시 별표2(작성요령) 참고)
- ☑ 심사기준 충족여부 증명서류 (부속서류)
-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원본1부 제출

원본1부, 사본 15부 제출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종류

- ☑ (구성) 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규모)  
\*제1권, 제2권은 합쳐서 200쪽을 넘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부속서류 제출 가능

목차	주요내용
제1권 지정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제1장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지정신청기관의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li> </ul>
제2절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신청기관의 조직도</li> <li>• 주요업무 분야별 인력현황 명기</li> <li>• 임원급, 특수관계 주주의 신상 및 권한 명기</li> </ul>
제2장 지정신청기관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li> <li>• 재무 관련 증빙서류 별첨 가능</li> </ul>
제2권 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 규모	
제1장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제2장 기술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목차에 맞도록 별도 심사양식에 따라 작성</li> <li>* 심사양식은 추후 배포할 계획</li> </ul>
제3장 설비 규모	

신청기관 회계일정에 따라 '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 ~ '22년 자료로 제출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 서류심사 실시
  - 사업계획 보완
  - 증빙자료 추가
  - 현장실사 요청사항
  
- 서류보완 요청
  - 서류심사 결과전달

결과안내

## 지정신청기관

- 현장실사 전일까지 서류보완

서류점검 결과(현장실사 가능)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기관 : [redacted]

구분	내용
1.1.1	
1.1.2	
1.1.4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3	
3.1.1	
3.1.2	
3.1.3	
3.2.1	
3.3.1	
3.3.2	
3.3.3	
3.4.1	
7.4.3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서류의 보정 등)

- ① 지정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현장실사 실시 (7~8월, 기관당 5일간)

### 지정심사 장소(대회의장)

- 심사위원, 심사지원반, 신청기관 담당자 등 약 15명 이상이 착석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확보(월~금)
-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스크린 화면의 외부 시야가 차단되고, 좌석은 스크린을 향해 ㄷ(디근)자 배치
- 지원물품: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프린터(로컬), 1개 이상의 인터넷PC(검색용), 식수, 출입카드 등

### 인터뷰 장소(소회의실)

- 개별 심사위원이 인터뷰 진행할 수 있는 소회의실 3개 이상 확보(화~목)

### 심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 현장실사 방문하는 심사위원 인적사항 제공 불가
- 인적사항은 KISA 담당자로 통일 (소속: 방통위 심사단, 이름: KISA 담당자명 외 00명)
- 심사결과 최종 확정까지 심사위원 개별연락 금지

### 지정심사 자료 준비 및 담당자 업무협조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각 10부 (출력본 또는 노트북) / 현장실사 기간 중에 각 유관부서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협조 요청

### 현장실사 기간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심사기간 담당자 부재, 심사자료 제출 지연, 심사위원에게 질문 등 심사 지연 행위 금지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종합심사 실시 (9월중 2일간)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청문

1일차



- 심사위원이 지정 신청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 최고 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실시
- 지정 신청기관별 청문 일정, 장소 및 참석인원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적합/부적합 및 점수평가 실시

2일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등을 통해 심사 실시
- 중요 심사항목,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하고,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평가 실시

### 배점표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

(중요심사항목)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적합/부적합' 판단기준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	비고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지정기준 : ① 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적합' 평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 · 보안 및 관리	16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적합/부적합	
	접속정보의 위조 · 변조 방지	60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60	
기술적 ·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계량평가항목)*	적합/부적합	
	재정적 능력(계량평가항목)*	적합/부적합	
설비규모의 적정성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 · 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 · 발급 및 관리 설비	2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화재 · 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합계**		1,000	

## 지정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 결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 판단 기준



### 조건부 지정의 경우에는 조건\* 이행여부 확인후 지정서 교부

\* (예시) 지정심사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3개월내 조치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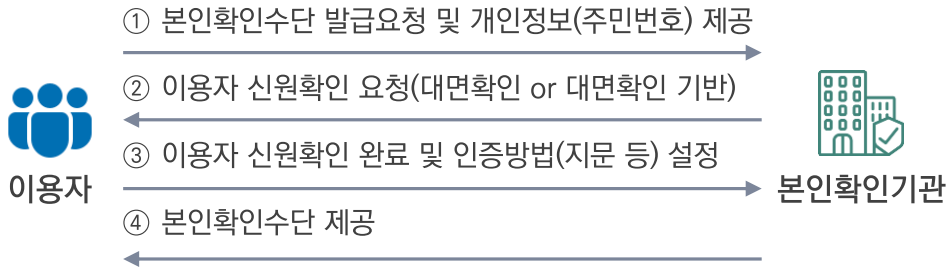
CHAPTER III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주안점 (심사항목 7장 관련)

## 본인확인서비스 방식결정(발급, 인증 등)

###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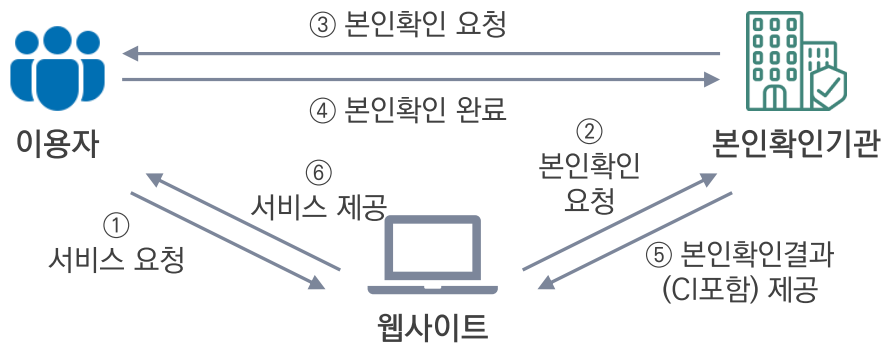
### 본인확인기관

- ☑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검증
- ☑ 이용자 신원확인 정합성 확인
- ☑ 이상징후탐지 및 부정발급 방지
- ☑ 주기적 허무인여부 확인
- ☑ 본인확인수단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발급(제공)

### 지정심사 핵심 심사사항

- 개인정보(주민번호) 검증방법
- 신원확인 정합성 확인방법
- 발급단계 이상징후 탐지방법
- 검증기관을 통한 허무인 확인방법

### 인증



- ☑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이용자 인증
- ☑ 인증우회방지 및 부정이용 방지
- ☑ 이상징후탐지 및 비상대응
- ☑ 주민번호 저장 및 관리

- 인증방법의 신뢰성 확인방법
- 인증우회, 부정이용 방지방법
- 이용단계 이상징후 탐지방법
- 주민번호 적법한 활용(목적외이용)

## 이용자의 개인정보 검증 및 신원확인 방법

### 개인정보 검증 방법

#### 개인정보 항목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인증정보(지문 등) 등

- 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 DB를 통해 이름,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확인



#### 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 DB(예시)

-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신용평가사)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을 통해 검증
-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KAIT)을 통해 검증
-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신용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전자정부법)을 통해 검증
- 인증서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행정안전부, 경찰청) 또는 신용평가사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아이핀과 동일한 방법을 위탁)

## 이용자의 개인정보 검증 및 신원확인 방법

### 신원확인 방법

- ✔ **[신원확인 방법]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확인 기반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도 가능**
  - **대면확인** : 오프라인에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고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표\*를 통해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대면확인 기반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예시)**
    - \* 본인확인서비스(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이용자 개인정보와 신원확인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 \* 이 밖에 대면확인에 준하는 확인 방법(예시: 카드배송인을 통해 확인, 은행창구(대면)에서 부여된 보안OTP를 통해 확인 등)
    - \* 유사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원확인 방법 적용 검토



## 이용자의 본인인증 방법

### 본인인증 방법

- ✔ **[본인인증 방법] 본인임을 유일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
  - **본인인증** :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본인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 \*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서비스 사업계획으로 인증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심사시 본인인증 방식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증방식 결함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본인인증 방법(예시)**
    - \* 지식기반 인증방식: ID/PW(아이핀) 등을 이용한 인증방식  
(다만, 쉽게 타인에게 양도, 노출 가능하므로 권고하지 않음)
    - \* 매체기반 인증방식: 본인이 소유한 휴대폰(본인명의) 등을 이용한 인증방식
    - \* 생체기반 인증방식: 지문, 홍채 등 본인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방식
    - \* PKI 기반 인증방식: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 인증방식



## 지정심사시 주의할 점

### 서비스 구현



- 현장실사 전까지 서비스 구현 완료할 것**
  - 예정된 현장실사 일정(7~8월 예상)을 고려하여 준비
  - 신청기관별 현장실사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

### 심사 대상



- 본인확인업무와 관련된 설비는 분리·미분리설비에 관계없이 심사대상에 포함**
  - 분리대상 설비(예시): 본인확인시스템(Web, WAS, DB), 인증모듈, 모바일앱, 네트워크(본인확인zone) 등
  - 미분리대상 설비(예시): 정보보안시스템(백신, DRM, DRP), 네트워크(대외방화벽, DMZ), 콜센터, 업무환경(PC, 그룹웨어) 등
- 본인확인기관 지정 완료후 구축 가능한 부분은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심사범위 예외: 서비스 로그파일, 데이터 보유, CI/DI 확보(아이핀社 개발문서에 따라 내부개발O, 시스템연동·테스트X)

### 시스템 분리



- 본인확인시스템(본인확인업무 전용 정보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분리할 것**
  - 시스템 분리기준: DB(물리적분리), Web/WAS(논리적분리 가능)
  - 서비스 분리기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경로상 다른서비스(광고, 제휴 등)와 분리

### CI/DI



-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시스템 내부에 CI/DI를 저장하지 않도록 권고**
  - (사유) 주민번호와 CI/DI가 함께 유출되는 경우, 전체 CI/DI 변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
-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CI/DI 생성모듈은 추가 배포하지 않을 계획**
  - 기존 배포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CI/DI 확보



## CHAPTER IV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참고자료 설명



##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 해설서

### 해설서 개요

2024. 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지정·정기심사 평가기준 해설서



- ✔ **[목적]**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본인확인기관 보호수준 제고 및 원활한 지정·정기심사 업무를 수행
- ✔ **[필요성]** 심사대상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자료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 **[심사대상]**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지정·정기심사를 통해 확인
  - (지정심사)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한 법인
  - (정기심사) 기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 해설서

### 해설서 설명내용 (예시)

- ☑ [평가기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고시) 별표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제시

- ☑ [심사내용 설명]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내용 심사기준 등을 기술

- ☑ [관련 법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법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

\* 다만, 모든 법규를 조사하여 현행화하기 어려우므로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서 개정절차에 따라 추후 반영

#### I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1.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물리적 출입 및 접근 통제

##### 1.1.가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감사

- (1) 비인가자가 본인확인업무 관련 발급·관리 설비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 (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시 원인, 일자 및 시각,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의 감사기록 기능

##### ■ 심사내용 설명

기준	주요 내용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 운영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li> </ul>
출입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구역에 대한 출입권한 등록·삭제는 별도 신청하여 관리</li> <li>본인확인업무 관련 보호구역에 비인가자가 접근·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 본인확인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li> </ul>
출입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기록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li> <li>※ 출입통제 저장정보: 일련번호, 행위자, 출입유형(IN/OUT), 출입위치, 성공/실패 여부, 실패 원인, 일자/시간 등</li> <li>출입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li> </ul>

#####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물리적 접근 방지)

## 지정심사시 주의할 점

###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 해설서

- [심사대상]** 해당 심사항목과 관련된 본인확인설비(HW/SW), 본인확인업무, 유관부서 등을 명시

\* 심사대상은 각 본인확인기관에 따라 시스템현황, 업무분장, 조직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본인확인기관의 상황에 따라 판단

- [담당자인터뷰, 증적자료, 현장실사]** 현장실사에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 기술

- (증적자료) 현장실사에서 심사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증적자료 명시
- (인터뷰) 심사항목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 설명내용 등을 명시
- (현장실사) 심사환경, 준비사항 등 심사위원에게 실사, 시연 등 필요한 사항 명시

- [사례 검토]** 심사항목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흡사례 예시

#### ■ 심사 대상

- 본인확인설비 보호구역(전산센터, 시스템 운영실, 보안관제실 등)
- 문서고(대체수단 발급서류, 개인정보 등 중요서류 보관소)

#### ■ 담당자인터뷰, 증적자료, 현장실사 등 준비사항

구분	준비사항
증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 지침</li> <li>• 보호구역 출입일자 및 출입권한 등록일자 설명자료</li> <li>•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 자산 목록</li> <li>• 출입통제 장치 종류 및 운영사진</li> <li>• 보호구역 배치도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 위치, 출입동선 표시)</li> <li>• 출입권한 부여인원 현황 (이름, 등록기간, 담당업무, 등록사유 등)</li> </ul>
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보안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 지침·정책 설명</li> </ul> </li> <li>• 보호구역(전산센터, 운영실, 관제실)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 출입동선, 출입일자 설명</li> <li>- 보호구역 출입권한 등록인원 및 등록사유 설명</li> </ul> </li> </ul>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물리적 보호구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li> <li>• 보호구역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li> <li>• 출입 동선상 통제되지 않은 출입문 및 우회경로가 있는지 확인</li> <li>• 인가된 상시 출입자에 대한 주기적 검토 확인</li> <li>• 보호구역 출입권한자 중에 불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li> <li>• 임시 출입자의 출입절차(카드기 반출입 등)의 적절성 확인</li> <li>• 출입 이벤트 발생 시 출입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li> <li>• 보호구역 출입내역을 확인 하여 비인가자의 출입기록이 있는지 확인</li> <li>• 출입기록은 정공·실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이상행위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유에 대한 감사절차가 있는지 확인</li> </ul>

#### ■ 사례 검토

- 미흡사례 1** • 출입권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없이, 퇴사한 직원의 출입권한이 취소되지 않고 방치
- 미흡사례 2** •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에 대한 출입 실패기록이 저장되지 않고 있음
- 미흡사례 3** • 출입대장의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아, 인터뷰에서 확인된 시스템 작업일자에 작업자의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의 분리 심사기준 안내서

### 안내서 개요



- ✔ **[목적]** 본인확인기관 평가기준 중에 ‘(평가기준 9-2)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함
- ✔ **[분리목적]**
  - (안전성 보장) 대체수단 제공, 이용자 식별·인증 등 본인확인업무 제공 시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의한 보안 취약점 및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
  - (신뢰성 보장) 온라인 서비스 확대 연계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등 정보주체의 중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수요조사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수요조사서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수요조사서

신청기관명		실무 담당자 연락처	(성명)	개인 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전화번호)	
본인확인 인증수단	<input type="checkbox"/> 아이폰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유 ※ 근거법령( )	
본사(심사장) 위치		본인확인설비 위치		
본인확인설비 구축 여부	<input type="checkbox"/> 구축완료 <input type="checkbox"/> 구축예정( ~ 월)	2023년도 지정심사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확실 <input type="checkbox"/> 미정(검토 중) <input type="checkbox"/> 추후 계획	

○ 실무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정심사 일정 안내 및 업무 협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3년 지정심사 일정 종료 시까지

- [목적]**  
 2024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정심사 추진계획 마련에 참고하기 위함
- [신청기관 및 담당자]**  
 지정심사 일정안내, 준비사항 설명, 요청사항 안내 등 업무협의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필요
- [신청기관 현황파악]**  
 인증수단에 따라 본인확인설비 구성, 구현방식 차이 등을 파악하여 심사 업무에 참고
- [심사장 및 설비 위치]**  
 심사장은 본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나, 물리적 보안 등 필요시 본인확인설비가 위치한 IDC 방문 필요
- [구축완료 및 지정심사 신청]**  
 본인확인설비 구축 또는 개발이 완료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며, 실제 지정심사 신청 여부 확인 필요



# CHAPTER V



# 참석자 질의응답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